

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 대상 안내

□ 적용 대상
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

□ 용어 정의

- 지역균형인재 :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
- 지방대학 :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)

□ 적용 예외

- 대학원 이상은 지방대학에서 제외
- 채용형 인턴(고졸) 분야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 제외